

## 국제중재에서 화상심리의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제언

### Practical Suggestions for Promoting of Virtual Hearing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김용일\*

Kim, Yong Il

황지현\*\*

Hwang, Ji Hyeon

#### 〈목 차〉

- I. 서론
- II. 중재와 첨단 디지털 기술
- III. ‘뉴노멀’로서의 화상심리
- IV. 화상심리의 활성화 방안
- 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주제어** : 국제중재, COVID-19 팬데믹, 중재기관, 친환경 중재, 화상심리, 뉴노멀.

\* 한국교통대학교 국제통상전공 교수, [kyi0407@ut.ac.kr](mailto:kyi0407@ut.ac.kr) (제1저자).

\*\* 강릉원주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 [jhhwang@gwnu.ac.kr](mailto:jhhwang@gwnu.ac.kr) (교신저자).

## I. 서론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불확실성 하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COVID-19 발병 이전의 소위 정상적인 상황으로 얼마나 빨리 복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추측했었다. 전염병 확산 초기에는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으며 몇 달만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 생각했고, 2020년 여름쯤에는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 긍정적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그 이후, COVID-19는 막대한 인명 손실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일자리 감소 및 기업 도산 등 다양하면서도 전례 없는 문제를 야기하면서 전 인류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필수 근로자로 분류되는 많은 변호사들과 법조계 종사자들에게도 이 시기는 정상과 재난 상태가 기이하게 혼재된 기간이었다. COVID-19 전염병의 발병으로 절망과 비극이 전 세계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덮쳤지만, 변호사, 법학자, 법률 관련 실무자의 업무는 계속되었다. 공공보건 관계자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사회적으로 생존하기 위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는 많은 필수 근로자와는 달리 대부분의 변호사, 법학자, 기타 법조계 실무자들은 재택근무로 일을 돌려 COVID-19 발병 이전과 마찬가지로 바쁜 업무를 영위했다.

경제 위기가 닥치면 변호사는 파산 관련 업무만 증가하지만, COVID-19와 같은 세계적인 전염병의 창궐 시에는 많은 기업의 계약상 의무 이행 능력이 필연적으로 타격을 받으면서 소송 사건이 늘어난다. COVID-19로 인해 상사분쟁의 증가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에서 중재는 유연하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드러났다. 중재는 COVID-19로 인한 분쟁해결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COVID-19 관련 제한 조치로 법원 대부분의 폐쇄 기간이 연장되고 일부 소송이 연기되거나 정지되면서 이 시기에 지속해서 활용되었다. 따라서 중재는 이 어려운 시기에도 계속 실행 가능한 해결방안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해왔다. 분쟁 당사자 역시 여러 가지 실용적인 이유로 소송보다 중재를 선택했고, 협상 초기 단계부터 중재에 대해 더 많은 의향과 관심을 표현했다.

COVID-19의 영향으로 중재기관, 당사자, 중재인(변호사 등) 및 기타 참가자는 화상심리 개시를 위한 전자소송 관리 도구라는 새롭고 현대적인 수단을 신속히 채택하고, 이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원격절차 관련 프로토콜 및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어 중재 활용 시 필요한 도구 및 안정적인 메커니즘이 제공되었다. 전 세계가 COVID-19 시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중재기관은 가능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의 기술 활용 지침을 발표하고 협력하면서 중재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증진에 이바지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COVID-19 환경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화상심리가 COVID-19 시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피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 I 장 서론에 이어 제 II 장에서는 친환경 중재와 스마트 중재를 가능하게 한 첨단 디지털 기술에 관하여 검토하고, 제 III 장에서는 ‘뉴노멀’로서의 화상심리의 활용을 위한 다양한 이슈에 관하여 고찰한다. 이어, 제 IV 장에서는 화상심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실무적 제언을 통해 화상심리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제 V 장 결론과 함께 글을 마무리한다.

지금까지 국제중재에서 화상심리를 주제로 발표된 논문은 김용일·황지현의 “COVID-19 가 국제중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일부 언급되었을 뿐, 그 외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sup>1)</sup> 그러므로 본 연구는 COVID-19와 같은 국제중재의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수단으로서 화상심리의 활성화에 대한 이론 및 실무지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독창성이 있다.

## II . 중재와 첨단 디지털 기술

### 1. 친환경 중재

오늘날 중재 분야에서 기술의 활용은 더 이상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실제로 새롭게 부상하는 기술적 도구가 중재 업무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sup>2)</sup> 디지털 기술이 낳은 새로운 현실이 사회, 문화, 교육 분야의 혁명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에서는 어떤 사용자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한 없는 인터넷 접근이 가능해졌다. 중재에 있어서 첨단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및 기후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창적이고 특화된 포럼이 국내외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데, 중재는 이 요건을 충족하는 가장 적절하면서도 준비된 분쟁해결제도이다.<sup>3)</sup>

기후 변화를 방지하고 2015년 파리협정의<sup>4)</sup>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부문이

1) 김용일·황지현, “COVID-19가 국제중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융합정보논문지』, 제11권 제12호, 중소기업융합학회, 2021, pp.80-89.

2) F. U. Soares, New Technologies and Arbitration, 7 *Indian J. Arb. L.* Volume VII, Issue 1, 2018, p.84.

3) B. Roe, The Year Ahead - Innovation: A new generation of legal analysis tools is emerging, GAR(21 January 2019), <https://globalarbitrationnews.com/the-year-ahead-innovation-a-new-generation-of-legal-analysis-tools-is-emerging>. 2022년 3월 20일 최종 방문.

4)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본회의에서 195개 당사국이 채택한 협정으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주도로 체결된 협정이다. 동 협정은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짐에 따라 친환경 중재(greener arbitration)라는 이슈가 많은 관심을 받았다.<sup>5)</sup> 중재는 다양한 기후 변화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국제중재 커뮤니티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취하고 있다.<sup>6)</sup>

중재절차의 이행과 관리 시 지나치게 많은 종이가 사용되고 에너지 낭비와 이동이 발생함에 따라 환경적 부작용과 탄소 배출이 증가하는데,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좀 더 환경 친화적인 접근법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2019년에 시작된 루시 그린우드(Lucy Greenwood)의 ‘친환경 중재’ 캠페인은 중재절차에서 친환경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가속화했다는 측면에서 COVID-19 전염병의 효과와 부분적으로 일맥상통한다.<sup>7)</sup>

이 캠페인은 중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신중히 고려하는 방법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중재절차에 있어 당사자, 중재인, 기타 참가자 모두에게 친환경 서약을 장려한다. 특히 법조계의 업무 관행에 COVID-19가 미친 영향과 이 친환경 서약(Green Pledge)<sup>8)</sup> 간에는 상당히 중첩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COVID-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동 제한 등으로 대면 활동이 축소되었고, 심리 및 회의의 편리한 진행 및 전자문서 접근을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COVID-19로 인해 전 세계 중재인들은 업무수행 방식을 바꿀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친환경 중재 관행을 수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되었다. 이후 이 캠페인은 막대한 추진력을 얻었으며, 중재실무에 있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세계적 전환의 흐름에서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sup>9)</sup>

## 2. 스마트 중재

오늘날, 머신러닝(Machine Learning)과 로봇공학이 거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거의 모든 직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 널리 수용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통적인 교육을 받은) 법조계와 미래를 대비하고 그에 적절한 교육을 받은 법조계는 더 이상 같지 않을 것이다. 일부 직업은 어찌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거나 혹은 다른

5) Campaign for Greener Arbitrations, <https://www.greenerarbitrations.com/greenpledge>. 2022년 3월 20일 최종 방문.

6) The Freshfields Pod cast([podbean.com](http://podbean.com)), The Freshfields Pod cast - Arbitration Insider: Why is climate change and arbitration such a hot topic?, Free Listening on Podbean App; Arbitration from Dentons Podcast Series -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Free Listening on Podbean App. 2022년 3월 20일 최종 방문.

7) L. Greenwood, The Canary Is Dead: Arbitration and Climate Change,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38, 2021, pp.309-326 참조.

8) [www.greenerarbitrations.com](http://www.greenerarbitrations.com), An initiative to reduce the carbon footprin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s through behavioural change. 2022년 3월 25일 최종 방문.

9) 지금으로서는 인간의 유일한 거주지인 지구를 가능한 한 ‘친환경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따라서 중재절차에서 발생하는 종이와 탄소 소비를 상쇄하는 조치를 가능한 신속히 취해야 한다.

방법과 도구의 개발로 인간이 불필요해질 수도 있다. 물론 새로운 직업도 나타날 것이고, 특히 젊은 세대들은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도구에 적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습 및 연구 방법 역시 변화하여 새로운 경계를 열고, 새로운 시너지를 연결할 기회를 촉진하며, 현재까지의 개발을 앞으로 나타날 발전과 신속히 결합함으로써 기하급수적인 규모의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중재 분야에서도 중재절차 시 중재인은 업무를 보조하고 촉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적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술적 도구의 범위는 자동완성 (예측) 코딩을 통한 보다 효율적인 문서 분류 도구부터 사건의 비용 및 심지어 결과까지 예측 가능한 인공지능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다만, 첨단 기술이 접목된 중재는 보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이버 안보는 중재 시스템의 완결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기밀 정보 획득을 위해 사이버 공격이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분쟁에서 전술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혹은 사기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sup>10)</sup> 또한, 시스템에 대한 공격으로 중재 과정이 방해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는 중재 시스템에 대하여 특히, 비밀보장 및 투명성과 밀접히 관련된 데이터 보호 결과와 관련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중재는 분산된(decentralized) 체제로서, 각 사안의 필요에 맞게 유연한 메커니즘을 제시하기 때문에 국경 간 거래와 관련된 복잡한 분쟁을 다루기에 가장 적합하다.<sup>11)</sup> 따라서 중재와 신기술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 관계에서 파생되는 상호 이익은 이미 활용될 준비가 되어 있다. 부상하는 신기술은 중재절차의 효율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적절한 분쟁해결제도로써 중재의 확실성을 제공해 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신기술은 중재를 새로운 세분화된 시장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sup>12)</sup>

중재 관리를 위한 목표 혹은 임무로서 효율성 및 비용 관리와 관련된 조항은 국가 중재법, 기관 중재규칙 및 기타 연성법 요소에 통합되면서 많은 관할권에서 명문화되었다. 어떤 당사자가 일단 중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AI 도구가 혹은 자체적으로 높은 성공 확률을 예측했기 때문이며, 각 사안에 적용 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해당 당사자는 다양한 수준의 디지털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sup>13)</sup>

10) Protocol on Cyber security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ICCA, NYC Bar, & CPR, CPR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onflict Prevention & Resolution (cpradr.org); Cyber security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ICCA-NYC Bar-CPR Working Group ICCA(arbitration-icca.org).

11) R. Koulou, Blockchains and Online Dispute Resolution: Smart Contracts as an Alternative to Enforcement, volume 13, Issue 1, 2016, SCRIPTed 40. <https://script-ed.org/?p=2669> Blockchains and Online Dispute Resolution: Smart Contracts as an Alternative to Enforcement-SCRIPTed(script-ed. org), 2022년 3월 25일 최종 방문.

12) G. Vannieuwenhuyse, Arbitration and New Technologies: Mutual Benefits,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ume 35, Issue 1, 2018, p.119.

13) F. Fortese and L. Hemmi, Procedural Fairness and Efficiency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Groning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ume 3, Issue 1, 2015, pp.110-124.

### Ⅲ. ‘뉴노멀’로서의 화상심리

#### 1. 화상심리의 최근 동향

COVID-19로 인해 사람들은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국가의 공중보건조치에 따라 이동 및 대면 교류가 제한되었다. 전염병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은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해결책과 변화된 상황에 적응할 방안을 찾기 시작했다. 국제중재에서도 중재인들은 모두 대면심리에서 화상심리로의 전환을 빠르게 도모하게 되었다. 물론, 이 변화가 즉시 나타난 것은 아니다. 2020년 3월, 전 세계에서 봉쇄·격리 조치가 시행될 때 봄·여름 심리가 가을에는 대면으로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돌이켜보면 오관이었던)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 후에 드러났듯이, 세계 곳곳에서 꽤 전형적인 양상이 유사하게 나타났다.<sup>14)</sup>

2020년 초여름, 중재인들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하나는 대면 심리가 가능한 불확실한 순간을 기다리며 분쟁해결을 무기한 연기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즉각 화상심리를 여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중재 사용자들에게 이는 쉬운 선택지로서 그들은 바로 후자를 선택했다.<sup>15)</sup> 그동안 화상심리는 항상 먼저 선택된 경우는 없었으며, 언제나 부차적인 보충안으로 고려되었다. 이에 따라 중재인과 기타 참가자들은 화상심리 진행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중재 참가자들은 화면을 주시하면서 발생하는 피로에 대처하는 법을 알게 되었고, 세계 곳곳의 참가자와 시간대를 조정하기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깨어 있게 되었다. 특히 중재인들은 화상 플랫폼에서 회의를 주관하기 위해 중재기관이 제공하는 프로토콜의 초안을 검토하고 이를 실무에 사용하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나아가 이들은 화상 환경에서도 당사자들과 증인의 증언을 중재 언어로 동시통역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재 사용자들은 예컨대, 발언할 때는 스피커를 켜고, 발언하지 않을 때는 스피커와 카메라를 끄기, 화면 분할 및 공유, 손을 드는 법, 채팅하는 법, 화상회의 플랫폼이 제공하는 다양한 여러 혜택을 선택하는 법 등 다양한 온라인 에티켓을 배우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재 참가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14) J. Fellas,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the Midst of COVID-19: One Year Later*, *New York Law Journal*.  
<https://www.law.com/newyorklawjournal/2021/03/19/international-arbitration-in-the-midst-of-covid-19-one-year-later/?sreturn=20220309012433>, 2022년 4월 2일 최종 방문.

15) *International Arbitration Survey(2021): Adapting Arbitration to a Changing World*.  
<https://arbitration.qmul.ac.uk/research/2021-international-arbitration-survey>. 2022년 4월 2일 최종 방문.

Commerce, 이하 “ICC”), 런던국제중재법원(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이하 “LCIA”) 등의 중재기관 및 세계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등의 여러 중재 전문기관이 화상심리 이슈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한 규칙 및 지침의 변경을 확인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실례로, 2020년 4월, 화상으로 열린 모의국제상사중재 경연대회(Willem C. Vis Moot Court Competition)에서 LCIA 현 법원장인 Paula Hodges는 “기술이 아주 잘 작동하면서, 미래 ‘화상중재심리의 세계’에 대한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했다. 이것이 가능하며, 매우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했다.<sup>16)</sup>

이제 대부분의 사용자가 상기의 모든 것을 할 줄 알게 된 이 시점에서 제기되는 질문은, 과연 화상심리가 우리가 사는 시대의 분위기를 드러내며 과도할 정도로 많이 쓰이는 표현인 ‘뉴노멀(New Normal)’이 될 것인지 여부이다. 또한 공중보건조치 등의 제약이 더 이상 없는 경우에도 온라인에서 ‘만나기로 하는’ 선택이 계속 유지될지 여부이다. 처음에는 직접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의 ‘증폭 현상’이 있을 것이다. 직접적인 만남은 인간을 인공지능과 차별화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업 분야에 있어서 효율성은 그 자체로 발언권을 갖기 때문에, 당사자가 더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면 화상심리를 선택할 것이다. 생각건대, 화상심리는 하나의 옵션이며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이자 선택에 앞서 신중히 고려하고 가중치를 따져보는 기회이지만, 저절로 새로운 규범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일부 중재 관행이 보다 나은 쪽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점은 틀림없다.

직접 친구를 만날 수 없을 때는 줌(Zoom)으로 만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그러나 COVID-19 등 이례적인 상황이 없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화상보다 직접 친구를 만나는 쪽을 선호할 것이다. 화상으로 만나는 것은 느낌이 다르다. 이는 화상심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향후 불확실한 시기에 직접 대면심리를 하는 것과 즉시 화상심리를 하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중재 참가자들의 선택은 분명하다. 앞으로 백신 접종이 늘어나고 더 많은 사람에게 면역이 생기면서 전염병 때문이 아니라 비용 효율성 및 시간 최적화를 위해 당사자가 화상심리를 선택하는 시기가 오기를 희망한다.

## 2. 절차적 효율성

주요 중재기관 중 하나인 ICC는 현대의 국제중재 관행과 관련한 중요한 이슈를 수용하기 위해 중재규칙을 수정하였으며,<sup>17)</sup> 다른 중재기관도 이와 유사하게 관련 규칙을 수정하

16) J. Walker, Virtual Hearings—the New Normal, GAR, 2020. <https://globalarbitrationreview.com/article/1222421/virtual-hearings-%E2%80%93-the-new-normal>. 2022년 4월 5일 최종 방문.

17) Kluwer Arbitration Blog, The 2021 ICC Arbitration Rules: Changes to the Arbitral Tribunal’s Powers.

었다. ICC 중재규칙은 당사자가 더 이상 중재신청 등의 의사 표현 및 제출 자료를 출력물 형태로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한다. 출력 사본이 필요한 경우는 오직 한 당사자가 등록된 우편 혹은 등기로 확인증과 함께 사본 전달을 요청한 경우이다. 현재로서는 위와 같은 조항 수정이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좀 더 기술적이고 현대적인 중재 관행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매우 중요한 조치라 할 수 있다.<sup>18)</sup>

화상심리는 ICC 중재규칙 제26조 제1항에 이미 명시되어 있다. 제25조의 “직접(in person)”이라는 기존 문구는 모든 당사자가 같은 심리실에 물리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것이 의무로 간주된다는 주장을 가능케 했으나, 지금은 ICC 중재규칙에서 삭제되었다. 제26조는 명시적으로 일방 당사자가 그렇게 요청하거나 중재판정부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 “화상회의, 전화 혹은 기타 적절한 의사소통 수단을 통해 원격으로” 심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다.<sup>19)</sup> 이는 COVID-19 시기에 이미 입증된 것처럼, 많은 중재 심리가 화상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는 인식이 늘어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심리를 대면 혹은 원격으로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와 반드시 협의해야 하며, 사건 관련 사실 및 정황을 고려해야 한다. “기타 적절한 의사소통 수단”이라는 조항은 향후 기술적 발전이 심리에 고려될 수도 있음을 뜻한다. 이에 따라 당사자는 종이 문서가 아닌 전자 형식의 신청서 제출을 통해 중재가 개시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일부 중재기관에서는 서면 의사소통 규칙을 변경하여 (하드 카피가 아닌) 전자 형식의 신청서 제출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되었다.<sup>20)</sup>

비엔나 국제중재센터(Vienna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이하 “VIAC”)와 스톡홀름 상공회의소(Stockholm Chamber of Commerce, 이하 “SCC”) 등 일부 중재기관은 또한 (내부용으로) 전면 전자화된 사건관리 시스템의 사용 가능성을 제안하고 있다.<sup>21)</sup> 기타 많은 기관도 디지털 관리를 표준화하고 등록된 사건에 대한 정보 흐름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그러한 플랫폼을 제안하고 도입함으로써 같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COVID-19로 재부팅되고 있는 듯한 세계에서, 이와 같은 위기는 발전을 위한 기회가

<https://iccwbo.org/dispute-resolution-services/arbitration/rules-of-arbitration>. 2022년 4월 5일 최종 방문.

18) 전자적 의사소통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은 ICC 중재규칙 제3조 제1항, 제4조 제4항(b), 그리고 제5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다. 한편, COVID-19 이전에 개정된 2019 ICC 지침은 ICC 중재규칙뿐만 아니라 ICC 국제중재법원의 실무에 따른 중재 진행 관련 사항들을 당사자와 중재판정부에게 실무적 지침(practical guidance)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다(ICC 지침 제1항). 또한, 달리 적시되지 않는 한, 동 지침은 적용되는 어떠한 중재규칙 버전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ICC 중재사건에 적용된다(ICC 지침 제2항). 안건형, “2019년 개정 ICC 중재 진행에 관한 당사자 및중재판정부 지침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중재연구』, 제29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9, p.68.

19) ICC(2020), ICC Guidance Note on Possible Measures Aimed at Mitigating the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22.

20) SCC Arbitration Rules(2020), Art. 5.

21) SCC(2020), SCC Platform Made Available to Ad Hoc Arbitrations Globally. [https://sccmstitute.com/bout-the-scc/news/2020/scc-platfbrm-made-available-to-ad-hoc-arbitrations-lobally/?link\\_id=GZORGcLaWyIa](https://sccmstitute.com/bout-the-scc/news/2020/scc-platfbrm-made-available-to-ad-hoc-arbitrations-lobally/?link_id=GZORGcLaWyIa). 2022년 4월 10일 최종 방문.



될 수 있으며, 관련 조치도 신속히 취해지고 있다. 따라서 무료의(추가 비용 없는), 안전한(물리적 및 법률적 오류가 없는), 관련성 있는(목표에 맞게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 효율적인(시간 및 비용 측면), 동시에 사용자 친화적인(그러한 설비를 받는 사람이 사용하기 쉬운) 통합 디지털화 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위한 리스트가 제시될 수 있다.

중재의 관리적 측면에서 전자 플랫폼은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고, 중재기관은 이처럼 안정적인 디지털 플랫폼을 도입하여 사용자가 모든 제출된 자료 및 증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경쟁하고 있다. SCC 플랫폼은 한 중재사건 내에서 모든 절차 전반에 걸쳐 참가자 간 안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단순화하도록 장려한다. 또한 홍콩국제중재센터(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이하 “HKIAC”)는 중재절차의 모든 참가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문서의 전송 및 저장 옵션으로서 안전한 온라인 보관소 혹은 가상 데이터 룸을 활용한다.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이하 “SIAC”)<sup>22)</sup>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이하 “ICSID”) 역시 이와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으며,<sup>23)</sup> 좀 더 최근에는 VIAC가 그러한 포털을 도입했다.<sup>24)</sup>

본 연구자는 화상심리 절차 및 그 관리와 관련한 표준화 시스템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모든 중재기관은 동일한 방식으로 절차를 관리할 것이고, 중재 사용자는 특정 업무수행 방식 및 IT 흐름에 적응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며, 이를 다시 해당 플랫폼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관이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중재의 가장 큰 장점은 국제적인 절차로서 일관성이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언어’로서 전 세계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절차의 디지털화로 인해 이와 같은 플랫폼이 필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 활용이 편리해야 하고 이를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사용자는 이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sup>25)</sup>

이러한 확일성은 매우 방대한 증거 관리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불필요한 관행의 정리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재판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은 이제 필수적이다. 그 이유는 중재판정부만이 불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증거의 사용을 제한하고, 절차의 중복을 방지하며, 증인의 진술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재인은 모든 사건의 특정 상황에 맞게 절차적 순서를 변경하고 효율적으로 조직화하도록 당사자를 안내할 필요가 있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가 여전히 논쟁 중인 이슈와 이제는 논쟁이 되지 않는 이슈에 대한 공동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여 각 당사자가 제시하는 사실과 주장을 한층 더 이해함으로써 중요한 이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즉 중재 참가자 간의 보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

22) SIAC(2020), Arbitration at SIAC during COVID-19. <https://siac.org.sg/covid-19>.

23) ICSID(2020), <https://icsid.worldbank.org/services/hearing-facilities>.

24) VIAC(2020), <https://www.viac.eu/en/arbitration/general-measures-covid-19>.

25) C. R. Drahozal, Diversity and Uniformity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Law, 31 Emory Int'l L. Rev. 393, 2017, p.399.

선을 도울 수 있다. 이를 위해 현대의 신기술은 실제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 3. 화상심리의 적법 절차

일반적으로 국가 중재법은 한 당사자가 반대할 때에도 화상심리를 열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거의 다루지 않는다. 오늘날 세계 주요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화상심리를 허용한다. 이러한 추세는 LCIA, ICC, SIAC, SCC 등 주요 중재기관이 이미 정립했으며, 더 많은 중재기관이 이 선례를 따를 것이다.<sup>26)</sup> 동일한 맥락에서, 중재기관들은 서면 커뮤니케이션 규칙을 변경하여 거의 대부분 전자문서 형식을 사용하게 되었다. 많은 중재기관은 이미 전자 커뮤니케이션 증가와 관련한 새로운 규칙을 도입했고, 일방 당사자가 요청하거나 법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화상회의, 전화 혹은 기타 적절한 의사소통 수단을 통해’ 화상심리를 개최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sup>27)</sup>

앞서 언급했듯이, 2021년 초부터 ICC가 도입한 전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은 ICC 중재규칙 제3조 제1항, 제4조 제4항(b)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 따르면, 당사자는 더 이상 암묵적으로 서면 제출 의무를 지지 않으며, 전자문서 형식만으로도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화상심리는 ICC 중재규칙 제26조 제1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심리를 대면 혹은 화상으로 진행할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와 상의해야 하며, 사건의 관련 사실 및 정황을 고려해야 한다. “기타 적절한 의사소통 수단”이라는 표현 역시 미래의 기술적 발전을 심리에 적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사회가 겪고 있는 신속한 전환에 건설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환영할만한 출발점이다. 하지만 이처럼 유익한 규정을 포함하도록 국가 중재법을 빠른 시일 안에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법의 디지털화는 국내외적으로 시작된 또 하나의 프로젝트이지만,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고 완전히 기능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중재는 당사자의 동의로 시작되기 때문에 한쪽 당사자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중재인이 화상심리를 열기로 하는 경우, 어떠한 법률 효과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 중재 커뮤니티가 논의하기 시작했다. 오스트리아 대법원이 화상심리와 적법 절차에 관한 최초의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sup>28)</sup> 이 주제에 대한 판례는 없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공정한 재

26) LCIA(2020), LCIA Services Update: COVID-19; ICC(2020), ICC Guidance Note on Possible Measures Aimed at Mitigating the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22; SIAC(2020), Arbitration at SIAC during COVID-19; SCC(2020), SCC Platform Made Available to Ad Hoc Arbitrations Globally; CIETAC(2020), CIETAC Launches Guidelines on Proceeding with Arbitration Actively and Properly During the COVID-19 Pandemic(Trail).

27) M. L. Shope, THE INTERNATIONAL ARBITRAL INSTITUTION RESPONSE TO COVID-19 AND OPPORTUNITIES FOR ONLINE DISPUTE RESOLUTION, Contemporary Asia Arbitration Journal, Vol. 13, No. 1, May 2020, pp.72-74 참조.

판에 대한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절차가 진행될 경우, 한 당사자의 반대가 있는 경우에도 중재인은 화상심리 일정을 정할 수 있다. 많은 중재 실무자들과 학계에서 참고하게 된 이 판결에서 오스트리아 대법원은 오스트리아가 중재지였던 중재사건에서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수립했다. 이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화상회의를 통한 심리 개최는 한 당사자의 반대 표명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부는 원칙적으로 심리를 개최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다. 또한 그러한 결정은 중재인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눈을 굴리는 등 중재인의 부정적인 비언어적 반응은 편견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 중재인 기피로 이어지는 결론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한 당사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부가 화상심리를 개최한 것에 대해 피신청인은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VIAC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VIAC의 결정에 불복하여 이 사안을 오스트리아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주장을 검토한 이후,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첫째, 불충분한 준비 시간과 관련하여 법원은 피신청인의 심리 중단 요청을 중재판정부가 거부하기 전에 당사자가 심리 일자를 통지받았다고 언급하였다. 일방 당사자가 심리 연기를 요청한 경우, 당사자는 그 요청이 (반드시) 수락되고 심리 일자가 연기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상정할 수 없다. 연기 요청서를 제출한 당사자는 항상 그 요청이 거부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따라서 기존 합의된 날짜에 진행될 수도 있는 심리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나아가, 피신청인에게 충분한 준비 시간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거부 결정이 나온 일자가 아닌, 연기 요청 전 당사자가 정한 일자가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피신청인에게 심리를 준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판결하였다.

둘째, 시간대와 관련하여 법원은 이동 혹은 시간대 관련 어려움 여부를 불문하고, 피신청인이 이론적으로 로스앤젤레스와 비엔나 사이의 지리적 거리와 관련된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법원은 6:00 PST로 정해진 화상심리 시간은 피신청인에게 감당하지 못할 부담을 준 것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대면심리 진행 시 로스앤젤레스에서 비엔나까지 이동하는데 드는 노력과 시간을 줄여주었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시간대 관련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셋째, 증인 조작과 관련하여 법원은 COVID-19 이전에도 화상심리 및 증거 채택이 이미 화상회의를 통해 실시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COVID-19 전염병 발병과 함께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어려움을 관리함에 있어 기술 활용이 좀 더 중요해 지고 있다고

28) Docket File no. 18 ONc 3/20, published on 28 September 2020, the Austrian Supreme Court.

강조하였다. 법원은 증인 조작의 위험은 대면심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심리가 화상으로 진행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심각한 절차상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중재판정부의 중립성을 훼손하거나 적법 절차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법원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어떠한 절차상의 규칙이 위반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보다는 적법 절차의 원칙 및 심리 받을 권리에 대한 일반적인 위반 및 침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으나, 결국 법원은 증인 조사 조작 가능성에 대한 피신청인의 의혹을 수용하지 않았다.<sup>29)</sup>

요컨대, 중재 커뮤니티에서 잘 알려져 있듯이 화상심리는 COVID-19 전에도 활용되었으며, 국제중재에서 화상심리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예컨대, 화상심리는 신속중재 및 긴급중재 절차에서 자주 사용된다.<sup>30)</sup> 또한, 특정 증인 혹은 전문가가 원격으로 증언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COVID-19 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터뷰 대상자의 상당수는 이미 국제중재 절차에서 화상회의를 사용해 본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더 놀라운 점은 ICSID가 2019년 심리 대부분을 화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한 점이다.<sup>31)</sup>

또한 2020년 서울국제중재센터(Seoul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Center, 이하 “IDRC”)는 2019년에 비해 ‘서울 IDRC’ 화상심리 서비스를 이용한 심리 건수는 500%, 일수는 460% 증가했다고 발표했으며,<sup>32)</sup> HKIAC 역시 COVID-19 시작 이래 HKIAC의 화상심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상당수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 2020년 2월부터 9월까지 HKIAC에 접수된 심리 관련 문의 중 65%가 화상심리 지원과 관련된 것이었다.<sup>33)</sup>

따라서 COVID-19 사태로 인해 중재 사용자는 심리 방식을 재고하고 화상심리의 유효성 여부를 평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세계는 여전히 COVID-19 여파 속에 있고, 화상심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의 선택지가 아닌, 거의 모든 사용자가 채택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선택지가 되었다. 이 선택지를 어느 정도 사용한 참가자는 화상심리가 혜택이 많은, 매우 편리하고 효율적·현대적 도구임을 이해했고,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신속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중재 커뮤니티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바라왔던 것으로 중재절차 전반에 빠르게 수용되었다.

29) S. Kapferer, Austrian Supreme Court confirms arbitral tribunal’s ruling to hold virtual hearing despite one party’s objection, December 4, 2020. <https://globalarbitrationnews.com/austrian-supreme-court-confirms-arbitral-tribunals-ruling-to-hold-virtual-hearing-despite-one-partys-objection>. 2022년 4월 15일 최종 방문.

30) 최근 채택된 UNCITRAL 신속중재규칙(2021 Expedited Arbitration Rules)은 제3조에서 “당사자와 중재판정부는 조치 및 절차를 신속하게 해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원격심리를 포함한 기술적인 수단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고 규정한다. 이춘원, “UNCITRAL 신속 중재의 도입과 전망”, 『중재연구』, 제 32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22, p.35.

31) ICSID, A Brief Guide to Online Hearings at ICSID(24 March 2020), A Brief Guide to Online Hearings at ICSID, ICSID(worldbank.org), 2022년 4월 15일 최종 방문.

32) Seoul IDRC(2020), Virtual Hearing Services-Recent. [http://www.sidrc.org/idrc/en/bbs/board\\_view.do?bo\\_table=news\\_en&wr\\_id=863](http://www.sidrc.org/idrc/en/bbs/board_view.do?bo_table=news_en&wr_id=863). 2022년 4월 15일 최종 방문.

33) HKIAC(2020). Services and Success Stories, <https://www.hkiac.org/news/virtual-hearings-hkiac-services-and-successstories>. 2022년 4월 15일 최종 방문.

이번 COVID-19 위기는 중재판정부와 중재기관이 새로운 규칙과 절차를 도입하여 중재 절차의 적절한 기능 및 사법 행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하는 동력이 되었다. 다만, 이러한 규칙과 절차는 화상심리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으나, 당사자가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심리 받을 권리 및 적법 절차와 관련된 기타 이슈 등 다른 중요한 절차상의 권리를 어렵게 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법적 이슈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제공하는 데는 실패했다.<sup>34)</sup>

따라서 오스트리아 대법원의 판결은 화상심리의 기틀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COVID-19 위기 시작 후 중재 커뮤니티에서 언급된 중요한 이슈 중 일부를 다뤘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화상심리 개최에 우호적이었던 오스트리아 법원의 판결은 화상심리를 개최하는 다른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이미 영향을 미쳤거나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 IV. 화상심리의 활성화 방안

### 1. 가이드라인

새로운 도전 과제에 적응한 중재 및 그 사용자와는 달리, 국가 법원은 아직 COVID-19 위기에 그리 신속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중재는 사적 분쟁해결방법으로서 사용자의 기대를 충족하면서 주목 받을 기회가 있었으며, 지속적인 화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

COVID-19 전염병 발발 초기, 중재 커뮤니티는 지침을 제공하고 중재인이 이 전례 없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새로운 도전 과제를 신속히 해결했다. COVID-19로 인한 봉쇄 기간 중 나타난 상당수의 가이드라인 및 웨비나(webinar)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원격·화상심리가 이뤄지며, 이 화상심리가 적법 절차 측면에서 중재판정의 적용 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sup>35)</sup>

중재기관은 중재 커뮤니티에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공동성명문을<sup>36)</sup> 발표함으로써 COVID-19에 대응했다. 이 공동성명문은 중재 참가자에게 중재기관이 사용자와 중재인

34) 화상심리의 부정적인 효과에 관하여 상세히는, W. Stephan, THE IMPACT OF COVID-19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 HICCUP OR TURNING POINT?, 13(1) *Contemp. Asia Arb. J.* 7, 2020, pp.15-16 참조.

35) 화상심리의 적법 절차에 관하여 상세히는, L. Alex, Virtual Hearings and Alternative Arbitral Procedures in the COVID-19 Era, 13(1) *Contemp. Asia ARB. J.* 85, 2020, pp.89-91 참조.

36) [https://www.viac.eu/images/documents/Covid-19Joint\\_Statement.pdf](https://www.viac.eu/images/documents/Covid-19Joint_Statement.pdf), 2022년 4월 20일 최종 방문.

을 조력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국제중재의 잠재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처럼 불안정한 시기에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제공하고자 한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주고자했다. 물론 중재기관은 당사자가 불합리한 지연 없이 심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당사자와 중재인은 개방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COVID-19의 영향 및 잠재적인 해결책에 대해 논의하고, 중재규칙 및 관련 중재기관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장려된다. 그러나 중재절차에서 심리 방법 등의 결정은 궁극적으로 중재판정부의 책임이자 권한이다. 예컨대, 당사자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및 심리 받을 권리라는 핵심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심리를 연기할 것인지 또는 대면심리, 화상심리, 하이브리드심리<sup>37)</sup> 개최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온전히 중재판정부에 달려있다.<sup>38)</sup>

화상심리에서 주요 이슈는 다음 내용을 보장하는 것이 될 것이다. 예컨대, 모든 참가자가 동일 조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 품질, 충분한 수의 카메라, 혹은 360도 회전 카메라, 중재 공간을 담을 수 있는 스크린, 휴식 시간 및 줌 실시간에 따른 피로 방지 등이다. 이 모든 요소와 다수의 스크린을 관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상당한 기술이 요구된다. COVID-19로 인해 기술이 중재실무에 신속히 적용되면서, 앞으로의 이니셔티브를 표준 관행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나아가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속중재 시에는 원격근무와 화상심리를 채택하게 되었는데, 이는 업무수행 방식을 바꿀 의사와 능력을 암시한다. 특히, 중재인이 좀 더 자주 원격회의에서 숙고하기가 쉬워진바, 이는 중재판정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중재인 간 상호작용은 중재판정의 품질을 보장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고 유익하다. 특히 주요 중재기관이 권장하는 프로토콜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화상심리는 중재 품질 뿐만 아니라 중재의 효율성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sup>39)</sup>

증가하는 하이브리드와 화상심리의 활용을 통해 중재가 너무 비싸고 오래 걸린다는 비판 역시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화상심리의 활용은 국제중재절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이슈를 해결할 수 있으며, 중재인의 다양성을 한층 더 증진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친환경 중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며,<sup>40)</sup> 이에 대한 보다 지속 가능한 접근이 필요하다.

37) 하이브리드 화상심리는 (일부)증인 혹은 (일부)전문가 심리 등 특정 단계만 화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38) <https://www.ibanet.org/Article/NewDetail.aspx?ArticleUid=A7F75D89-2CFD-4386-9689-53341> DOASSDA, 2022년 4월 22일 최종 방문.

39) F. Kun,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Kluwer Arbitration Blog (10 July 2020), <http://arbitrationblog.kluwerarbitration.com/2020/07/10/the-impact-of-covid-19-on-the-administration-of-justice>, 2022년 4월 22일 최종 방문.

40) Campaign for Greener Arbitrations, 각주 5 참조.

## 2. 실무적 제언

화상심리 진행 시 참가자는 해당 심리가 가능한 최상의 조건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이슈를 고려해야 한다. 관련 논점 중 하나는 증거법 및 심리 진행 방식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중재규칙과 관련되어 있다. 예컨대, 중재 참가자가 비디오를 켜고 동시에 참석하여 구두변론 등의 발언권을 보장받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한다면 심리의 형태는 제약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화상심리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는 중재합의서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대면심리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추후에 논의 및 결정될 수 있다. 이외에도 한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현 상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화상심리를 여는 것이 중요한지, 심리가 실제로 필요한지, 그리고 심리 없이 문서만으로 진행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심리 개최 가능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동일한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지, 인터넷 연결 상태는 좋은지, 참가자의 정상적인 참여를 저해하지 않도록 심리 시간대가 충분히 조정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화상심리를 위한 새로운 기술적 도구를 도입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도구의 적절한 활용에 따른 피로는 전체 커뮤니티가 직면한 요인 중 하나이다. 또한 전체 심리 녹화가 적절한지 여부, 증인의 참여 및 증인 조사를 보장하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사전에 명백한 규칙을 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화상심리에 따른 이슈가 이처럼 많은 상황에서 중재판정부가 화상심리를 채택하는 것은 다소 용기 있는 결정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중재절차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서는 모든 법률적 요건을 준수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보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모든 측면을 철저히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어느 상황이나 화상심리를 적용하는 것은 권고할 수 없다. 때로는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현대적 기술이 익숙하지 않고 적응이 되지 않은 일관적으로 이를 다룰 수 없는 중재인 중 한 명이 화상심리를 반대할 수 있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심리가 좀 더 적합한지 여부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참가자가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은 심리 참석의 불평등 및 불균형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이다. 심리 전 성실하고 신중한 사전 계획이 필수적이며, 심리가 열릴 장소에 설치된 기술적인 구성으로 화상심리 현장을 테스트해보는 것이야말로 그러한 심리가 관리 가능한지 및 정확한 조건에서 진행될 수 있는지를 확실히 결정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 V. 결론

국제중재에서 대부분의 중재절차는 원격으로 진행된다. 예컨대, 중재신청서 제출, 중재 통지, 중재인 선정 및 임명 등 중재절차의 개시부터 사건관리, 일정 수립, 쟁점사항 요약, 증거 및 자료 교환 등 중재심리 전 단계는 물론, 중재판정에 대한 전자서명 등이다. 또한, 대면심리가 어려운 경우 효율적인 심리 진행을 위하여 화상심리를 적절하게 대체할 수 있다.

이제 COVID-19 사태로 중재 커뮤니티가 화상심리를 다시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화상심리가 정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게 되었다. ICC, LCIA, SCC, ICSID 등의 주요 중재기관들은 화상심리 개최 시 중재 사용자를 장려하고 지원할 뿐만 아니라, 참가자가 중재절차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고, 이에 따른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로 관리지침을 마련하거나 중재규칙을 개정하였다.

그동안 화상심리는 긴급중재 혹은 신속절차가 채택되었을 때와 잠정 또는 보존조치 결정을 위해 특히 권고되었다. 이러한 종류의 절차는 단기적 조건을 필요로 한다. 당연히 이는 상당한 시간 및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데, 더 이상 출장비, 숙박비, 식사비와 같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으며, 단지 디지털 방식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예산이 지출된다. 이 절차는 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대면심리에 비해 더 나은 실행계획을 갖고 완료될 수 있다.

따라서 즉각적으로 소통하며 전자적으로 공유 가능한 파일 내에서 모든 참가자의 더 쉽고 즉각적인 접근을 보장할 수 있다. 이는 향후 다수의 사람이 모여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환경오염을 줄이며, 새롭고 혁신적인 접근법 채택을 통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및 위기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는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화상심리를 신속히 채택하는 것은 중재의 실행성을 보장할 뿐 아니라, 국가 법원 및 기타 분쟁해결방법과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

COVID-19 팬데믹은 그 종료 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재분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로 인해 전통적인 중재절차 특히 대면심리 방식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건설적인 협력과 의견 합치가 요구되는 지금, 분쟁 당사자, 중재인, 기타 참가자들은 지나치게 기존의 방식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새로운 중재 진행 방식에 적응하면서 지속 가능하고 일관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용일·황지현, “COVID-19가 국제중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융합정보논문지」, 제11권 제12호, 중소기업융합학회, 2021.
- 안건형, “2019년 개정 ICC 중재 진행에 관한 당사자 및 중재판정부 지침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중재연구」, 제29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9.
- 이춘원, “UNCITRAL 신속중재의 도입과 전망”, 「중재연구」, 제32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22.
- Alex, L., Virtual Hearings and Alternative Arbitral Procedures in the COVID-19 Era, 13(1) *Contemp. Asia ARB. J.* 85, 2020.
- CIETAC(2020), CIETAC Launches Guidelines on Proceeding with Arbitration Actively and Properly During the COVID-19 Pandemic(Trail).
- Docket File no. 18 ONc 3/20, published on 28 September 2020, the Austrian Supreme Court.
- Drahozal, C. R., Diversity and Uniformity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Law, 31 *Emory Int'l L. Rev.* 393, 2017.
- Fellas, J.,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the Midst of COVID-19: One Year Later, *New York Law Journal*. URL: <https://www.law.com/newyorklawjournal/2021/03/19/international-arbitration-in-the-midst-of-covid-19-one-year-later/?slreturn=20220309012433>.
- Fortese, F. and Hemmi, L., Procedural Fairness and Efficiency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Groning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ume 3, Issue 1, 2015.
- Greenwood, L., The Canary Is Dead: Arbitration and Climate Change,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38, 2021.
- HKIAC(2020). Services and Success Stories, HKIAC. URL: <https://www.hkiac.org/news/virtual-hearings-hkiac-services-and-successtories>.
- ICC(2020), ICC Guidance Note on Possible Measures Aimed at Mitigating the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22.
- ICSID, A Brief Guide to Online Hearings at ICSID(24 March 2020), A Brief Guide to Online Hearings at ICSID, ICSID(worldbank.org).
- International Arbitration Survey(2021), Adapting Arbitration to a Changing World. URL: <https://arbitration.qmul.ac.uk/research/2021-international-arbitration-survey>.

- Kapferer, S., Austrian Supreme Court confirms arbitral tribunal's ruling to hold virtual hearing despite one party's objection, December 4, 2020. Kluwer Arbitration Blog, The 2021 ICC Arbitration Rules: Changes to the Arbitral Tribunal's Powers. URL: <https://iccwbo.org/dispute-resolution-services/arbitration/rules-of-arbitration>.
- Koulu, R., Blockchains and Online Dispute Resolution: Smart Contracts as an Alternative to Enforcement, volume 13, Issue 1, 2016.
- Kun, F.,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Kluwer Arbitration Blog(10 July 2020). URL: <http://arbitrationblog.kluwerarbitration.com/2020/07/10/the-impact-of-covid-19-on-the-administration-of-justice>.
- LCIA(2020), LCIA Services Update: COVID-19.
- Roe, B., The Year Ahead - Innovation: A new generation of legal analysis tools is emerging, GAR(21 January 2019).
- SCC(2020), SCC Platform Made Available to Ad Hoc Arbitrations Globally.
- Seoul IDRC(2020), Virtual Hearing Services-Recent. URL: [http://www.sidrc.org/idrc/en/bbs/board\\_view.do?bo\\_table=news\\_en&wr\\_id=863](http://www.sidrc.org/idrc/en/bbs/board_view.do?bo_table=news_en&wr_id=863).
- Shope, M. L., THE INTERNATIONAL ARBITRAL INSTITUTION RESPONSE TO COVID-19 AND OPPORTUNITIES FOR ONLINE DISPUTE RESOLUTION, *Contemporary Asia Arbitration Journal*, Vol. 13, No. 1, May 2020.
- SIAC(2020), Arbitration at SIAC during COVID-19.
- Soares, F. U., New Technologies and Arbitration, 7 *Indian J. Arb. L.*, Volume VII, Issue 1, 2018.
- Stephan, W., THE IMPACT OF COVID-19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 HICCUP OR TURNING POINT?, 13(1) *Contemp. Asia Arb. J.* 7, 2020.
- Vannieuwenhuysse, G., Arbitration and New Technologies: Mutual Benefits,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ume 35, Issue 1, 2018.
- Walker, J., Virtual Hearings—the New Normal, GAR, 2020. URL: <https://globalarbitrationreview.com/article/1222421/virtual-hearings-%E2%80%93-the-new-normal>.
- Wilske, S., THE IMPACT OF COVID-19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 HICCUP OR TURNING POINT?, 13(1) *Contemp. Asia Arb. J.* 7, 2020.

## ABSTRACT

### Practical Suggestions for Promoting of Virtual Hearing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Kim, Yong Il  
Hwang, Ji Hyeon

This article examines the Practical Suggestions for Promoting of Virtual Hearing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COVID-19 had an prompt and meaningful impact on the practice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Nevertheless arbitral institutions, arbitral tribunals, and other participants learned quickly how to deal with this new challenge. The use of virtual or online hearings has been gaining popularit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ither with the help of arbitral institutions or by themselves, the parties realized that the only way to safeguard a hearing at all was to run it virtually. In fact, hearings by video conference or other technical means seemed to be the magic solution.

One of the leading arbitration institutions, i.e.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 Paris has amended its Arbitration Rules to accept the subjects of recent international arbitration practice. Other arbitral institutions have similarly amended their respective rules.

Many recent and adaptable institutional arbitration rules, either expressly or implicitly, allow for hearings to be conducted remotely. The trend has already been set by the leading institutions as ICC, LCIA, ICSID, SCC SIAC, and many more will follow. In short, enthusiasts of virtual hearings even believe that virtual hearings are “the new normal”.

**Key Words** : International Arbitration, COVID-19 Pandemic, Arbitration Institutions, Green Arbitration, Virtual Hearings, New Normal